

서식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2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자격 요건	주택소유여부 ¹⁾	(○, ×)	신혼부부 여부 ²⁾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³⁾	(○, ×)	보증기관 ³⁾	
	보증가입일자 ³⁾	납입보증료 ⁴⁾	원
	임차보증금	원	연소득 ⁵⁾	원

지급계좌 ⁶⁾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작성방법

- 1)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소유 여부 기재
(심사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현황 확인시스템으로 추가 확인)
- 2)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 4)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확인
- 5)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 6)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한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결정(적합)
 결정(부적합)

통지서

신청인/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적합

1. 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자	생년월일	지원금액	지급계좌	지급(예정)일
홍길동	0000.00.00.	000,000원	○○은행 000-00000-000000000	2024. 0. 0.

2. 사후확인결과, 허위 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부적합

대상제외 사유	<input type="checkbox"/> 자격심사결과 지원 자격 미충족() <input type="checkbox"/> 제외대상자에 포함() <input type="checkbox"/> 기타()
안내	1. 귀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개인여건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재심사 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할 시 지원금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보조사업자(시·군·구)의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구)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소속부서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3**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처분내용		[] 부적합	[] 상실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안내사항

1. 보조사업자(시·군·구), 시·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2.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군·구청장, 시·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조사업자(시·군·구)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보조사업자(시·군·구)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4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발 신 명 의

작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5**의견제출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7

환수통지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지원내용				
환수(반환) 사 유				
환수결정액		원	납부장소	
기 납부액		원		
납부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p>「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지원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p>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성명

(서명)

서식9

지원대상자 현황

연번	신청일	대상자명	생년월일	성별	물건지 주소	임차보증금 (백만원)	연 소 득 (백만원)	주택소유 여부	제외대상 여부	지원결정	통지일	지원금액 (원)	비고
1	24.7.5.	홍길동	1994.01.01.	남	○○도 ○○시 ○○구 ○○동 000-00	298	48	X	X	적합	24.7.20.	145,000	예시
2	24.7.5.	이순신	1991.02.01.	남	○○도 ○○시 ○○구 ○○동 000-00	302	42	X	X	부적합	24.7.20.		보증금기 준 초과

* 업무 절차상 필요시 제출 양식이나 방법은 변동될 수 있음